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한 실태연구

정정일*

요 약

우리나라 경찰은 지난 반세기동안 국내·외적인 시련을 극복하면서 질서유지자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경찰을 둘러싼 환경은 국제화와 개방화, 민주화와 지방화, 산업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치안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범죄유형이 날로 흉폭화·조직화·광역화 되는 추세여서 경찰 대응의 한계점과 더불어 장구·무기사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장구와 무기 허용은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선행과제로 인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경찰관들에게 지급된 장구·무기의 사용이 우리의 현실에 있어 실효성과 효과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일선 경찰관들의 법 집행력이 어느 범위여야 적정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경찰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경찰 집행력 행사와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survey on the use of firearms & equipment in police and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Jeong-ile Jeong*

ABSTRACT

Korea's police force has successfully performed its difficult mission of maintaining public order while overcoming difficulties at home and abroad during the past half century. However,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forces of law and order operate has exponentially increased the demand for, and difficulties faced by, the agents of law enforcement in recent years because of the country's rapid globalization, as well as the move to democracy and localization, and the extensive developments in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diffusion. This study also intends to investigate the appropriate limits of law enforcement and the use of force by policemen, and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the police as they fulfill their duty of protecting citizens' rights.

Key words : police equipment, firearms, safeguarding human rights, police power, gun control

접수일(2016년 5월 24일), 게재확정일(2016년 5월 30일)

* 학교법인 장훈학원 상임이사

1. 서 론

한 국가가 존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평화를 보호 할 필요가 있다[1]. 우리나라 경찰은 지난 반세기동안 국내·외적인 시련을 극복하면서 어려운 질서유지자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경찰을 둘러싼 환경은 국제화와 개방화, 민주화와 지방화, 산업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전개되어 치안수요를 폭발적으로 증대시키고 있어 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2]. 또한 범죄유형도 날로 흉포화·조직화·광역화 되는 추세여서 경찰의 장구·무기사용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어 지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오래 전부터 장구의 휴대를 해 왔었고, 전국의 파출소 근무자에게 근무시 총기(3.8권총)를 휴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총기 사용에 있어 과잉총기사용이라는 책임과 비난을 피할 수 없어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경험 많은 경찰관일수록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총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며, 총을 한번 쏘아 본 경험이 있는 경찰관은 두 번 다시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총을 쏘지 않으려고 한다[3].

따라서 본 연구는 이미 경찰관들에게 지급된 총기·장구의 사용에 대한 실효성과 효과성이 있는지 살펴 보고, 일선 경찰관들의 법 집행을 위한 업무 수행에 있어 장구 및 총기 사용의 적합성에 대한 현실측면과 더불어 국민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신뢰성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경찰권의 의의

2.1.1 경찰권의 개념

경찰권이라 함은 경찰작용으로서 발동되는 일반통치권의 일부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복지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명령과 요구를 발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서 실력을 가하는 권한이다[4].

이러한 경찰권의 발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제10조의4(무기의 사용)에 근거하고 있으나 사회의 질서유지가 국가존위에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므로, 모든 국가에 있어서 불가피한 일이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전형적인 권력 작용이기 때문에 항상 그 한계성이 문제되어 지고 있다.

2.1.2 경찰권의 범위

경찰권은 일반통치권의 작용이므로 그 나라의 통치권에 속하는 자는 내국인·외국인·자연인·법인을 막론하고 모두 그 작용대상이 되고 있는데, 경찰권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전형적인 침해적, 권력적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게 된다[5]. 그러나 경찰권 발동에 관한 근거 조항은 타 법률과 같은 통일적 구조를 지닌 것이 아닌, 다수의 법률에 근거 조항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의 미비로 인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는 경우가 일부 발견되고 있다.

즉, 우리의 경우에는 단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7호에서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고 규정하는데 그쳐 이와 같은 표현방식은 경찰에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입법의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가 생성될 수 있어 위법의 방지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무리하게 일반수권조항으로 보고 경찰권을 발동시킬 경우 인권침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2 경찰 총기·장구의 사용과 인권보호 관계법령

2.2.1 경찰 총기·장구의 사용에 관한 법령

경찰관이 총기·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관련 근거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총기사용의 경고) 및 제10조(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3조

(무기 탄약 취급상의 안전관리)등이 있다.

경찰권 행사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와 위해를 가할 수 없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경찰권 행사의 범위를 총기(권총)·장구(경찰봉)로 한정 짓는 반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를 나타내고자 한다.

2.2.1 인권보호에 관한 법령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권리 즉 ‘인권’(Human rights, droit de l’homme, Menschenrechte)이라는 표현과 ‘자유와 권리’라는 표현 그리고 기본적 권리 즉 ‘기본권’(fundamental rights, droits fondamentaux, Grundrechte)이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는데, 외국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외적으로도 기본권과 인권이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으나 한국헌법학에서 일반화된 기본권이라는 용어는 그 기본에 있어서는 인권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헌법전 또는 헌법학의 대상으로서의 인권에 관한 연구는 바로 기본권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기본권이론 자연권사상에 바탕을 둔 천부인권론에 기초하여 실정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일련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규범적 이해의 체계로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권은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6]. 하지만 원리나 제도에서 기본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권리의 인정된다면 법률적 권리나 기본권 규정에 근거한다고 보아야 한다[7].

2.3 경찰 총기·장구의 사용과 인권보호의 비례이론

2.3.1 경찰 총기·장구의 사용의 정당화 이론

우리나라는 경찰공무원법 제20조에 무기휴대를 규정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서 그 사용 요건과 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령에 따라 경찰목적에 위해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총기를 사용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총기사용과 같은 경찰활동 자체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 정의 대변자로서 범죄와 싸우는 경찰관들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해를 가한 경찰관의 총기사용행위를 정당화시켜주고 면책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거로는 경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총기를 휴대하고 필요시 사용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 주어진 당연한 권한이며 직무행위로 보고 형법 제20조를 그 근거로 들어 경찰관의 총기사용 행위를 정당화하여 면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관의 총기사용 행위에 대해 정당화되고 면책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상대적으로 국민이 기본권 침해범위도 넓어진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대한 논의가 바로 경찰총기사용에 있어서 정당화와 정당화의 한계문제이다.

2.3.2 국민의 인권보호론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써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고유한 권리인 자유와 평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천부적인 인권 개념은 자연법에 기반을 둔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인간 존엄성이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로써, 여기에는 정치적인 살인이나 고문, 형벌, 투옥, 공정한 공개재판의 거부 또는 개인 생활의 침해 등을 받지 아니할 권리들이 포함된다.

둘째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로써 종교의 자유·의사표시 및 언론의 자유, 노조 결성권 등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 국내외 이주의 자유, 인권 및 성별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자유, 그리고 시민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써 이에는 경제발전의 권리, 취업의 권리 및 의료보호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8]. 인권보호란 이러한 기본권이 국가나 제3자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보호 받는 것을 의미한다[9].

2.4 외국의 경찰권 행사 실태

2.4.1 영국

영국 경찰은 전통적으로 근무시 총기를 휴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에

는 훈련을 받은 경찰관들에 한해 총기가 지급되고 그 이외 특별순찰대, 외교경찰, 원자력 경찰과 같은 특수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총기휴대가 허용되고 있다. 또한 총기사용에 관해 일반법(Common Law)을 적용해오다가 1967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형법 제3조에서 무력사용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즉 범죄의 예방, 범죄자나 범죄혐의자 또는 도주 중인 자의 체포나 체포의 원조에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

2.4.2 미 국

미국은 서부개척시대부터 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총기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헌법 제2조도 “모든 국민은 무기를 소지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 경찰의 총기사용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다.

1960년대 이전까지 미국경찰은 영국의 Common Law에 따라 중범죄인(felon)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총기사용이 허용되었다(fleeting felon rule). 그러나 1960년대 이후부터 미국내 인권운동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원칙은 비판에 직면하였고 경찰관이 총을 쏠 수 있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강구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각주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경찰조직, 복장, 장비, 근무수칙 등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나 Garner 판결[11]이후 경찰의 총기사용 규칙에 관해서는 경찰관 자신이나 일반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공통성을 띠고 있다. 특히 뉴욕시를 포함하여 다른 여러 주에서는 Garner판결에서 실시한 총기사용의 요건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12]. 따라서 오늘날 미국에서 용의자가 단순 도주하거나 무기를 휴대하지 않아 경찰관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2.4.3 독 일

독일에서는 1970년대 중반이후 범죄가 란트(Land) 단위를 넘어 광역화되자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란트 상호간의 통일적인 법적 규율이 요청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과 각 란트의 내무장관으로 구성된 연석회의에서는 1977년 11월 25일에 “연방과 각 란트의 경찰법 통일을 위한 모범초안, 이하 통일경찰법모범초안”을 통과시켰고, 많은 란트가 이를 토대로 총기사용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13].

통일경찰법모범초안은 제41조에 총기사용에 관한 일반규정, 제42조에 사람에 대한 총기사용, 제43조에 다중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총기사용, 제44조에 특수 무기, 폭발물의 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4.4 일 본

일본의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에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실천원리는 국가공안위원회규칙인 ‘경찰관권총·경봉등사용 및 취급규범’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무기의 사용)의 내용을 보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明治40년 법률 제45호) 제36조(정당방위), 제37조(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6조(미리 권총을 꺼내어 둘 수 있는 경우)에서는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제7조에 정해진 권총사용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권총을 꺼내어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권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규정을 보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경봉 등을 사용하는 등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사태에 대응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격자세를 취하거나 발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제8조(부대조직에 의하여 행동하는 경우)는 “다중범죄 진압 등을 위해 경찰관이 부대조직에 의해 행동하는 경우 또는 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의 부대지휘관의 명령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명령을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조(제3자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주의)에는 “경봉을 사용하거나 권총을 발사하는 때 등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 이외의 자에게 위

해를 미치거나 손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0조에서는 권총을 발사하는 경우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총을 발사할 때 미리 경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조사설계 및 분석

본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과 경찰관들이다.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한 생각에 대한 경찰관들의 입장과 국민들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전 경찰관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흔히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응답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비확률 추출법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 교육생 200명을 간편 추출법으로 조사하였으며, 일반 시민 200명에 대해서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비확률표본추출법의 한 방법인 보행자 조사법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자료를 가지고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과 총기와 장구의 영향이 경찰권(법집행력)과 시민의 인권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3.1 조사 분석 결과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하여 설문지 400부를 경찰들을 대상으로 200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200부씩 배포한 후 회수한 결과 전체질문 가운데 무응답이 너무 많아 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20부를 제외한 380부를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표본의 대상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 응답 대상

		빈도(명)	퍼센트(%)
유 효	시민	194	48.5
	경찰	186	46.5
	합계	380	95.0
결 측	결측값	20	5.0
합 계		400	100.0

표본에서 각 시민 경찰의 성별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본의 성별 분포는 경찰 중에서는 남자 경찰관이 9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 중에서는 남자 45.4%, 여자 50.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성 별

대 상		빈도	퍼센트	
경 찰	유 효	남자	179	96.2
		여자	4	2.2
		합계	183	98.4
	결 측	결측값	3	1.6
	합계		186	100.0
시 민	유 효	남자	88	45.4
		여자	98	50.5
		합계	186	95.9
	결 측	결측값	8	4.1
	합 계		194	100.0

표본의 연령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경찰에서는 30~40대의 표본분포가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연 령 대

대 상		빈도	퍼센트	
경 찰	유 효	10대	1	.5
		30대	94	50.5
		40대	81	43.5
		50대	6	3.2
		합계	182	97.8
	결 측	결측값	4	2.2
	합 계		186	100.0
시 민	유 효	20대	106	54.6
		30대	59	30.4
		40대	12	6.2
		50대	3	1.5
		60대이상	6	3.1
	합계	186	95.9	
	결 측	결측값	8	4.1
합 계		194	100.0	

경찰과 시민의 학력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경찰에서는 고등학교졸업, 대학졸업이상, 전문대졸업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민들 중에서는 대학교 이상되는 학력의 표본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 력

대 상		빈도	퍼센트
경 찰	유 효	고등학교졸업	71 38.2
		전문대졸업	41 22.0
		대학재학	7 3.8
		대학졸업이상	52 28.0
		합계	171 91.9
	결 측	결측값	15 8.1
합 계		186	100.0
시 민	유 효	고등학교졸업	28 14.4
		전문대졸업	19 9.8
		대학재학	46 23.7
		대학졸업이상	93 47.9
		합계	186 95.9
	결 측	결측값	8 4.1
합 계		194	100.0

3.2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에 관한 응답

본 연구의 각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먼저 경찰들의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3.2.1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표 5>와 같이 대체로 필요성에 대하여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필요성에 대한 응답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범죄 예방	총기의 필요성	13 (7%)	30 (16.1%)	26 (14%)	84 (45.2%)	33 (17.7%)
	장구의 필요성	8 (4.3%)	24 (12.9%)	34 (18.3%)	91 (48.9%)	29 (15.6%)
범죄 대응	총기의 필요성	8 (4.3%)	22 (11.8%)	26 (14%)	89 (47.8%)	41 (22%)
	장구의 필요성	1 (0.5%)	13 (7.0%)	27 (14.5%)	97 (52.2%)	47 (25.3%)

3.2.2 효과성에 대한 응답결과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의 효과성에 대한 응답은 <표 6>과 같이 대체로 효과성에 대하여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효과성에 대한 응답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범죄 예방	총기의 효과성	12 (6.5%)	33 (17.7%)	40 (21.5%)	67 (36.0%)	32 (17.2%)
	장구의 효과성	13 (7.0%)	44 (23.7%)	44 (23.7%)	65 (34.9%)	20 (10.8%)
범죄 대응	총기의 효과성	5 (2.7%)	36 (19.4%)	29 (15.6%)	81 (43.5%)	35 (18.8%)
	장구의 효과성	7 (3.8%)	30 (16.1%)	42 (22.6%)	78 (41.9%)	29 (15.6%)

3.2.3 집행방법에 대한 응답 결과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에 대한 집행방법에 대한 응답은 <표 7>과 같이 대체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7> 집행방법에 대한 응답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본권 존중	0 (0%)	6 (3.2%)	19 (10.2%)	99 (53.2%)	62 (33.3%)	
기본권 침해	총기 소지	71 (38.2%)	93 (50.0%)	15 (8.1%)	6 (3.2%)	0 (0%)
	총기 사용	64 (33.4%)	89 (47.8%)	16 (8.6%)	13 (7.0%)	4 (2.2%)
	장구 소지	76 (40.9%)	92 (49.5%)	14 (7.5%)	3 (1.6%)	0 (0%)
	장구 사용	67 (36.0%)	96 (51.6%)	16 (8.6%)	5 (2.7%)	2 (1.1%)

3.2.4 시민의 인권존중에 관한 응답

경찰의 국민들에 대한 인권존중에 대한 응답은 <표 7>과 같이 대체로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인권존중에 대한 응답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범죄 대응	총기 사용	11 (8.9%)	28 (15.1%)	22 (11.8%)	77 (41.4%)	47 (25.3%)
	장구 사용	5 (2.7%)	14 (7.5%)	21 (11.3%)	88 (47.3%)	58 (31.2%)

3.3 시민들의 인권존중에 대한 응답

3.3.1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표 8>과 같이 대체로 필요성에 대하여 높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8> 필요성에 대한 응답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범죄 예방	총기의 필요성	14 (7.0%)	38 (19.0%)	39 (19.5%)	90 (45.0%)	13 (6.5%)
	장구의 필요성	4 (2.0%)	13 (6.5%)	22 (11.0%)	106 (53.0%)	47 (23.5%)
범죄 대응	총기의 필요성	12 (6.0%)	18 (9.0%)	28 (14.0%)	114 (87.0%)	22 (11.0%)
	장구의 필요성	5 (2.5%)	7 (3.5%)	18 (9.0%)	114 (57.0%)	49 (24.5%)

3.3.2 효과성에 대한 응답결과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의 효과성에 대한 응답은 <표 9>와 같이 대체로 효과성에 대하여 대체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필요성에 대한 응답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범죄 예방	총기의 효과성	9 (4.5%)	43 (21.5%)	39 (19.5%)	80 (40.0%)	22 (11.0%)
	장구의 효과성	13 (6.5%)	33 (16.5%)	49 (24.5%)	72 (36.0%)	27 (13.5%)
범죄 대응	총기의 효과성	5 (2.5%)	26 (13.0%)	41 (20.5%)	94 (47.0%)	27 (13.5%)
	장구의 효과성	5 (2.5%)	22 (11.0%)	45 (22.5%)	90 (45.0%)	29 (14.5%)

3.3.3 집행방법에 대한 응답 결과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에 대한 집행방법에 대한 응답은 <표 10>과 같이 대체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10> 집행방법에 대한 응답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본권 존중		11 (5.5%)	41 (20.5%)	83 (41.5%)	27 (13.5%)	29 (14.5%)
기본권 침해	총기 소지	12 (5.7%)	93 (47.9%)	52 (26.8%)	28 (14.4%)	7 (3.6%)
	총기 사용	12 (6.0%)	70 (35.0%)	60 (30.0%)	38 (19.0%)	9 (4.5%)
	장구 소지	23 (11.5%)	105 (52.5%)	43 (21.5%)	17 (8.5%)	3 (1.5%)
	장구 사용	19 (9.5%)	88 (44.0%)	52 (26.0%)	23 (11.5%)	3 (1.5%)

3.2.4 시민의 인권존중에 관한 응답

경찰의 국민들에 대한 인권존중에 대한 응답은 <표 11>과 같이 대체로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인권존중에 대한 응답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범죄 대응	총기 사용	11 (5.5%)	38 (19.0%)	63 (31.5%)	59 (29.5%)	20 (10.0%)
	장구 사용	5 (2.5%)	20 (10.0%)	35 (17.5%)	88 (44.0%)	42 (21.0%)

3.4 분석결과의 검토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관해 실태조사를 한 후 경찰권 행사가 국민의 인권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찰권 행사 즉 경찰의 총기와 장구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 효과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경찰관의 총기와 장구의 사용이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총기와 장구는 사용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보호에는 아무런 침해도 되지 않지만 경찰의 총기나 장구가 사용 되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즉, 경찰관들의 총기나 장구 사용에 따른 언론 보도나 감찰조사, 민·형사상 책임 추궁 등에 대한 부담감이 총기와 장구의 사용을 주저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경찰관의 총기·장구 사용에 대한 언론보도에 경찰관들이 필요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주변에서 경험이 있는 경찰관들의 피해의식이 상당히 과장되어 전파된 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3].

본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은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현재 시민들은 강력범죄나 중요범죄에 대해 총기나 장구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경찰관들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다른 요인으로 인해 적절한 총기·장구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 총기와 장구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성은 있지만 효과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둘째, 범죄현장에서 경찰관의 총기·장구 사용의 효과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어 냈다. 이는 시민들이 범죄자에 대한 강한 처벌과 그 범죄자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셋째,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과 국민의 인권보호와는 어떠한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과 국민의 인권보호는 별개의 뜻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는 말이다. 본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찰권이 강해지면 국민의 인권보호가 약해진다는 질문에는 타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나옴으로 인해 경찰권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관계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민들은 실생활에서 지금의 경찰권보다는 더욱 강력한 경찰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법과 도덕상의 테두리 안에서 강력한 법집행을 원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시민과 경찰관의 생각이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었음으로 인해 많은 부분의 개선점을 찾아 낼 수 있는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물론 국민의 인권보호가 최우선으로 생각하여야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국민이 원하는 경찰권과 경찰이 원하는 경찰권의 위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다.

4. 개선방안

4.1 시민의 기본권 존중

4.1.1 시민참여 제도 신설

경찰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일환으로써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을 이루려고 많은 부분 노력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평가는 한시적일뿐이라는 지적이 대다수이다. 국민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2003년 초에 만들어 시행하였으나 대부분 모이면 시민의 참여부분 보다는 경찰측의 일방적인 주입식 회의를 통해 점차 그 의미를 잃어 가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그 제도도 호지부지 되어 버렸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두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국민들의 생각이 지배적이므로 경찰은 처음 시작한 올바른 취지를 끝까지 시행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이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시민이 경찰의 수사나 순찰 활동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지역사회의 많은 부분에 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한 시민은 경찰권 행사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많은 부분 이해가 이

루어 질 것이다. 또한 자발적인 범죄 신고나 경찰의 지원 단체로서 자리 잡아 진정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4.1.2 이미지 개선 노력

지금까지 우리의 경찰은 국민들의 위에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존재로 항상 기억되고 있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의 기성세대로 인하여 그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았다. 국민이 경찰을 불신임하고 경찰은 국민의 위해서 통치하려고 하면 이 평행선은 절대 만나지 못할 것이다. 즉 진정으로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고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여야만 이루어 질수 있는 일이다. 정치권력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민주국가에서 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항상 노력하고 끊임없이 국민과 발을 맞추려고 노력한다면 이제까지의 경찰 이미지는 어느 선진국 못지 않게 새롭게 태어 날 것이며, 국민이 신뢰하는 한국 경찰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게 될 것이다.

4.2 범죄대응방식의 개선

4.2.1 교육훈련 개선

경찰관이 총기·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범인의 체포나 도주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이다. 특히 범인의 체포나 도주의 방지에 있어서는 범인이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요범죄이거나 흉기 등을 소지하고 항거하는 경우 일정한 경우에 한해 상대방에게 위해도 가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규정하고 있다. 실제 경찰관 총기사용의 대부분도 중요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 있어 범인의 항거나 도주정도에 따라 경찰관이 어느 정도 까지 총기를 사용했지가 문제의 소지가 큰 부분이다. 왜냐하면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등의 규정을 통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와 위해를 가할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정들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총기사용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소송이 제기된 경우도 결국 경찰관의 총기사용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결국 ‘필요성’, ‘상당성’, ‘보충성’등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현행 총기사용 관련 법규상 경찰관의 총기사용으로 상대방의 위해를 가할 경우 1단계인 경우에는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되면 경찰관 총기 사용시 고려해야 할 문제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충성’이다. 즉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위해를 줄 수 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향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총기사용이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가정할 때 경찰관의 총기사용 허용 정도는 <표 1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1> 중요범인 검거시 상황별 총기 허용정도

상 황	총기사용		비고
	위해 미 가해 시	위해 가해 시	
1 단계 (경찰관등 위해 발생)	○	○	
2 단계 (흉기 등으로 경찰관 위협)	○	△ (보충성 필요)	다른 수단 고려 한 후 최후의 수 단으로 사용
3 단계 (범인 도주)	○	△ (보충성 필요)	다른 수단 고려 한 후 최후의 수 단으로 사용

치안현장 일선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적절한 총기 사용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실제 상황별 적절한 총기 사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실제 상황을 좁은 공간에서도 영상화시킨 프로그램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서 등에도 시뮬레이션 사격장을 설치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2.2 대체 총기·장구 도입

경찰관의 총기·장구사용은 범죄자 검거 등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요구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법적 필요충분조건 하에 총기가 사용되더라도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면 해당 경찰관도 총기사용의 피해자 못지않게 고통을 당한다. 왜냐하면 각종시민단체나 언론 등에서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거나 경찰관이 총기사용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내부 감찰조사, 심경 경우에는 소송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까지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관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총기사용을 허용하면서도 인권시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보다 덜 치명적인 경찰총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결국 경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총기·장구를 사용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38권총보다 덜 치명적인 대체장비의 도입이 시급하다. 외국경찰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에 덜 치명적인 비 살상용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 가령 미국 경찰의 경우 최루가스 분사기나 전기충격기, ‘빈백’이라 불리는 충격탄, ‘스턴 건’ 등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빈백’이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빈백’은 19밀리 구경의 산탄통에서 발사되는 작은 주머니에 금속가루를 채워 넣은 탄환으로서 맞으면 인체를 관통하는 대신 강한 충격을 주며 고무탄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한다. ‘스턴 건(Stun gun)’의 경우에도 전극을 전선에 연결하여 수 미터 밖의 범인에게 사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레이저 광선을 상대방에게 쏘아 일시적으로 시력을 마비시키는 장비도 등장하고 있다[14].

만약 우리나라 경찰에 도입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38권총을 발사하기 이전의 제압수단으로 적절할 것으로 본다. 가령 근접한 거리에서 상대방이 흉기로 저항하거나 장기 3년 이상 해당하는 범죄인이 도주하지만 도저히 검거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등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에 대한 홍보 없이 바로 도입시 인권단체나 언론 등에서 안전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전 충분한 홍보가 선행되

어야 할 것으로 본다.

4.2.3 과학장비 도입

항상 경찰권 행사(총기·장구의 사용)로 인해 시시비비가 거론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관들은 총기나 장구의 사용을 꺼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요범죄든 경범죄든 간에 범인의 검거가 우선이 아니라 경찰관 본인의 보호가 우선이 되어져 왔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은 마스크와 언론의 과장된 보도에 의해 경찰을 불신임하고 경찰관의 총기·장구의 사용을 억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 졌다. 따라서 여기서는 과학 장비의 도입(비디오카메라 설치)을 대안 책으로 제시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서울 몇 군데에 방범카메라가 설치 운영중이다. 하지만 정말로 범죄와 마주치고 대처하는 것은 경찰관 개인이며 그 개인은 차량순찰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순찰차량의 전면에 자동으로 녹화를 할 수 있는 비디오 시스템을 설치하여 범죄현장의 도착부터 종료까지를 모두 기록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비디오를 관독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와 경찰관의 행사에 충돌이 생겼을 때는 즉각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색을 띄고 있는 몇몇 시민단체의 경찰권 행사는 축소시키 보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경찰권 행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모든 국민의 정치참여 시대가 나타나고 있는데 경찰도 그에 맞추어 하나의 단체나 정당에 움직이는 모습보다는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현재 경찰관들의 경찰권 행사는 더욱 합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경찰권 행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4.3 강력범죄자의 강력대응

4.3.1 범죄자에 대한 법적용 강화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은 오히려 경찰권 행사가 강해져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즉 경찰권이 강해져야 선량한 국민의 인권보호는 확대된다는 개념이다. 지금 현재의 경찰제도에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고, 강력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단속을 해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강력범죄자를 대응하다 보면 총기·장구의 사용이 다른 범죄보다 더욱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분위기나 일부 시민단체, 언론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물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은 최소한으로 발동하여야 하지만 정작 필요한 상황에서도 사용하지 못 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둘째, 언론이 잘못된 초점으로 인해 강력범죄자의 잘못된 부분보다는 하나의 인격으로서 인권을 우선시하는 보도 활동이 다른 시민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하게 하는 점이다. 이로서 강력범죄자의 범죄행위는 뒷전으로 밀리고 총기·장구의 사용을 강조함으로써 마치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이 잘못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강력범죄를 검거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함으로써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배제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런 과정에서 경찰은 허탈감을 느끼고 자신의 근무 활동에 최선을 다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상에서 지금까지 경찰의 강력범죄자에 대한 경찰 총기·장구 사용은 그야말로 경찰의 이미지와 시민들 간의 거리를 더욱 넓히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지금 한국 경찰은 국민의 생각 속에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경찰”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권이 너무 약하다는 결론을 본 연구에서 알 수 있었다. 여기서 경찰은 더욱 냉정하고 합법적인 시스템 안에서 “강자에겐 더욱 강하고, 약자에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찰”로 거듭 만들어 져야 한다.

4.3.2 마스크의 홍보 활동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에 있어서 마스크이나 언론 기관에서는 냉정한 판단 하에 범죄자의 범죄행동을 중점으로 보도하고 경찰관의 경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견해를 참조하여 보도하여야 한다. 한 예로 일본에서는 경찰이 오토바이 폭주족을 단속함에 있어 무차별적으로 강력히 단속을 시행하여도 일본의 언론이나 마스크에서는 폭주의 잘못된 점과 그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집중보도하고 경찰의 단속 사항과 결과를 보도하였다. 그 후 일본의 국민들은

경찰의 단속이 잘되었다고 평가하였고, 범죄의 강력 처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언론과 마스크에 있어서 경찰의 합법적인 단속이나 처벌에 대하여서는 긴급보도보다는 더욱 정확하고 국민에게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기본 취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5. 결 론

본 연구를 정리하면서 공동체 사회의 조화로운 유지를 위해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경찰활동에는 불가피한 경우 강제력을 수반하기도 하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경찰관의 총기·장구 사용이라 할 수 있다. 어느 국가든 범죄자를 제압·진압함에 있어 경찰에게 일정한 범위내의 총기·장구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총기·장구사용이 오·남용 될 경우 그 피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음을 외국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 이외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에서 총기·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막상 현장상황에 직면했을 때 경찰관들이 순간적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려 적정하게 총기·장구를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설부른 판단에 의해 총을 쏘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도 총을 쏘아 과잉총기 사용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망설임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범인을 놓치거나 경찰관이나 일반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곤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본 연구는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 경찰들의 생각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실증적 분석을 통해 나름대로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가 가지는 몇 가지 한계도 있다. 먼저 외국 경찰관들의 총기·장구사용실태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고, 국내 경찰관들의 총기·장구 사용 실제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려고 했으나 자료제공을 꺼리거나 면담을 거절하여 국회자료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연구자가 수집한 제한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려웠다. 또한 본 연구는 경찰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에 관한 조사였으므로 경찰과 국민이 원하는 정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차후 경찰권 행사와 관련한 문제점의 최소화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적정 방안을 위해 법령이라든지 사례집 등이 발간된다면 경찰권 행사를 위한 더 많은 실증적 연구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1]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p.3, 1998.
- [2]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p.585, 2002.
- [3] 석청호, “경찰관의 총기사용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 행정대학원, pp.3-77, 2003.
- [4] <http://100.empas.com/pentry.html?i=1062550>
- [5]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p.243, 2012.
- [6] 성낙인,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p.15, 1995.
- [7] 김문현, “기본권의 법적 근거와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국제헌법학회, p.167, 2012.
- [8] Maurice William Cranston, 'Rousseau on Equality',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2(01), pp31-32, 1984.
- [9] 이정은, “한국에서의 인권개념 형성과 인권운동”,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12, 1998.
- [10] 한인섭, “경찰관총기사용의 법적 요건과 한계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p43, 1997.
- [11] *Tennessee v. Garner*, 471 U.S. 1, 105 S.Ct. 1694, 1985.
- [12] Geller, William. A. & Scott, Michael, *Force,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 p260. 1992.
- [13] 이희경, “경찰관 총기 오·남용 방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 대학원, p.54, 1999.
- [14] 홍희범, “미국경찰의 총기사용”, *수사연구*, 10월호, p.26, 2001.

[저자소개]



정 정 일 (Jeong-ile Jeong)

경기대학교 법학사
 경기대학교 법학석사
 경기대학교 법학박사
 전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email : gojji882@daum.net